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태수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54

발의년월일 : 2016년 11월 30일
발 의 자 : 김태수 의원(1명)
찬 성 자 : 박진형·박중화·김경자(양천)·김용석(서초)·유 용·김제리·황준환·우형찬·최판술·김인호·최영수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정책지원 및 점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제3항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　　행	개　정　안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·② (생　략)	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신　설>	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